

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		2016년도 제4차 회의록	
일 시	2016. 11. 23.(수) 14:00 ~ 15:00	장 소	CHA BIO COMPLEX B113
참석의원	문창진 의원, 정광희 의원, 김진경 의원, 임지영 의원, 박재범 의원, 오일숙 의원, 최근영 의원		
불참의원	황태선 의원, 배진건 의원, 장용석 의원, 최설 의원		
간 사	강창호 기획실장, 경희수 기획실 사원		

I. 안 건

-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
-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
-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

II. 회의내용

▷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

- 문창진 의장(이하 의장)이 의원정수 11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
- 의장이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(안)을 상정하고 강창호 기획실장(이하 기획실장)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함
- 기획실장이 제38조 출석 제2항아래 각 호를 신설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칙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함
- 오일숙 의원이 각 호에 대하여 질의함
- 이에 기획실장이 질병, 부상 등의 경우, 직계존속 및 형제, 자매 사망 등의 사유, 조기 취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을 설명함
- 아울러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함을 설명함

▷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

- 의장이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(안)을 상정하고 기획실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
- 기획실장이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5조(지원자격), 제6조(지원절차), 제7조(전형 방법), 제8조(입학허가 및 취소), 제14조(의사국가고시 응시), 제17조(복학), 제18조(자퇴), 제20조(학년, 학기), 제21조(수업일수), 제21조 2(휴업일), 제23조(수강 신청), 제25조(시험), 제30조(학기), 제31조(수업일수), 제31조 2(휴업일), 제34조(교육과정), 제35조(임상실습 과정 등록), 제36조(임상실습 과정 등록), 제37조(학위 논문 양식), 제38조(심사위원), 제39조(학위논문 심사), 제40조(구술심사), 제 41조(심사의결), 제43조(공개발표), 제44조(학위논문 제출부수), 제45조(학위수여자격), 제50조(조직), 제51조(부설기관 및 연구소)의 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함
- 최근영 의원이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
- 이에 기획실장이 현재 조직 및 직제를 반영하고 법령 및 학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

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임을 설명함

▷ 제대학원 학칙 개정 심의

- 의장이 제대학원 학칙 개정(안)을 상정하고 기획실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
- 기획실장이 제대학원 학칙 제1조(목적), 제6조(지원절차), 제10조(정원의 입학), 제11조(입학허가 및 취소), 제12조(등록), 제15조(등록금의 반환), 제16조(장학금), 제18조(학기), 제19조(수업일수), 제20조(휴업일), 제21조(지도교수), 제23조(신청 가능 학점), 제26조(수업시간), 제37조(휴학), 제 45조(재응시), 제52조(논문심사), 제61조(학위수여요건), 제62조(논문 대체 졸업), 제63조(조기졸업), 제78조(징계), 제79조(조직), 제80조(위원회의 구성), 제81조(위원회 심의사항), 제82조(위원회의 의결), 제84조(원우회 구성), 제85조(내규)의 개정(안)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,
- 김진경 의원이 학칙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
- 기획실장이 제대학원 법령 및 규정 변화에 따른 내용 및 학칙의 전반적인 문구 수정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함
- 이에 참석한 모든 의원이 본안을 항목별로 논의한 바, “모든 항목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다”고 의견을 표하고,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권고하다.
- 의장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함

III. 폐회선언

-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

	의 원	서 명	의 원	서 명
확 인	문창진	문창진	정광희	정광희
	김진경	김진경	황태선	
	임지영	임지영	박재범	박재범
	오일숙	오일숙	최근영	최근영
	최 설		배진건	
	장용석			